

【 2015.11.17(화) 건설경제 】

〈매출액 2000억 미만〉

중견건설사도 하도급법 보호 받는다

공정위,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매출액이 2000억원을 밑도는 중견건설사들도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개정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세부 규정을 마련한 시행령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에 비해 2배까지 큰 중견기업도 수급사업자로 보호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중견 하도급법은 하도급대금 지급과 관련한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를 중소기업으로 한정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은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납품일로부터 60일 안에 대금을 지급하는 등

원사업자로서 각종 의무를 부담하면서도 대기업과 하도급거래를 할 때는 보호받지 못해 어음 등으로 대금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하도급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기업 계열사와 거래하는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 대규모 중견기업과 거래하는 소규모 중견기업도 하도급대금 등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박경남기자 knp@

▶2면에 계속

1면서 계속 = 중견건설사도 하도급법 보호 받는다

공정위는 소규모 중견기업과의 거래에서 대금지급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 규율대상 중견기업을 직전년도 매출액이 2조원을 초과하는 기업으로 결정했다.

직전년도 매출액이 1조~2조원 이하 중견기업들은 무역업, 유통업 등 하도급거래가 거의 없는 업종의 비중이 큰 만큼 규율대상의 실익이 거의 없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한 공정위는 하도급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직전년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기준 상한액의 2배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정했다.

이에 따라 매출액 1000억원 이하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분류하는 건설업의 경우 매출액이 2000억원 미만인 중견건설사까지 수급사업자로서 하도급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호를 받는 중견기업이 2900곳으로 전체 중견기업의 75%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다수의 중견기업들이 새롭게 하도급법상 대금지급 규정의 보호를 받게 되면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연쇄적인 대금지급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은 '법

위반행위 입증 자료를 최초로 제출하면서 신고한 자로 시행령에 규정됐다.

법을 위반한 사업자나 위반 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은 신고했다라도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포상금은 신고 행위가 법 위반 행위로 의결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최우수기업에 별점 6점, 우수기업은 4점을 감경해줬지만, 앞으로 감경 폭을 각각 3점, 2점으로 깎는 내용도 이번 시행령에 담겼다.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위에서 시정 명령이나 과징금을 받으면 별점이 쌓이는데, 별점이 누적되면 공정위는 해당 업체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영업정지 등을 요청하고 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와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박경남기자

오늘의 주요 일정

- ▶기재부, 세계은행 3분기 상품물가동향 (Commodity Outlook)
- ▶해수부, 10월 연안여객선 수송실적 분석
- ▶산업부, 해외프로젝트 수주 위기 돌파 위한 전략포럼 개최